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844호 2023. 7. 13.(목)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23-169호 곤명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준공인가 고시----- 1
- 사천시 고시 제2023-170호 청녘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3
- 사천시 고시 제2023-17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사항 고시----- 6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23-1006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7
- 사천시 공고 제2023-1007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8
- 사천시 공고 제2023-1008호 통행의 금지·제한 변경 공고----- 9
- 사천시 공고 제2023-1009호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소로2-66호선)]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10
- 사천시 공고 제2023-1011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4
- 사천시 공고 제2023-1013호 사천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30
- 사천시 공고 제2023-1015호 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㉔)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 공고- 42
- 사천시 공고 제2023-1017호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6
- 사천시 공고 제2023-1018호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58
- 사천시 공고 제2023-1019호 사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67

회 람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844호

사천시 고시 제2023-169호

곤명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준공인가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18-102호(2018.6.7.)로 최초 시행계획 고시되고 사천시 고시 제2022-258호(2022.12.1.)로 최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곤명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완료되어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공인가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3일

사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곤명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 사업의 목적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
3. 사업비 : 5,400백만원(국비 70%, 지방비 30%)

사 천 시 공 보

제844호

4. 주요사업내용

사 업 야	세부사업	사업개요	사업비(백만원)	비고
합 계			5,400	
기초생활 기반시설	소 계		3,697	
	다솔문화센터조성	부지 2,646㎡ (건축 연면적 303㎡)	1,927	
	녹차공원조성	A=436㎡	174	
	공동생활 홈조성	공동홈 조성 1식	405	
기초생활 기반시설	배후마을 연결도로	L=260m	506	
	김동리 산책로정비	L=785m	685	
지역경관 개 선	소 계		915	
	중심 가로경관정비	L=540m	347	
	봉명로 가로경관조성	L=580m	357	
	생태하천 정비	1식	211	
지역역량 강 화	소 계		788	
	교육 및 견학	1식	247	
	컨설팅	1식	92	
	운영지원	1식	45	
	부대비용(기본계획 수립 등)	1식	404	

5. 사업시행자 : 사천시청(도시재생과)

6. 사업의 착공일 및 준공일

- 착 공 일 : 2016년
- 준 공 일 : 2023년 06월 30일

7. 관계도서 : 게재 생략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도시재생과(☎055-831-32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844호

사천시 고시 제2023-170호

청년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청년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3일

사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청년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 사업의 위치: 사천시 서동 353번지 일원
3. 사업규모: 사면정비(L=140m, H=10~30m), 수목제거 A=3,000m², 식생토낭 L=46m, H=1.05m, 옹벽블록 L=115m, H=0.6m, 낙석방지망 A=486m² 등
4. 사업비: 700백만원
5. 사업기간: 2023. 1. ~ 2024. 12.
6.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성 명: 사천시장(재난안전과장)
 - 주 소: 경상남도 사천시 시청로 77
7.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와 소유자에 관한 명세 : 붙임 참조
8.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 결과: 해당사항없음
9. 사업효과 분석: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통한 재해위험 해소를 주민 생명 및 재산 보호

사 천 시 공 보

제844호

10.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합 계	2023년	2024년	비 고
사업내용	실시설계용역 및 사면정비 (L=140m, H=10~30m)	실시설계용역 및 사면정비 (L=140m, H=10~30m)	사면정비 (L=140m, H=10~30m)	
사업비	700백만원	300백만원	400백만원	

11. 유지관리계획

- 정비공사 완료 후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 의한 등급을 조정하고 (필요 시)이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해제
-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함.

12. 준공된 급경사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사천시장

13. 열람장소(실시설계도서)

- 열람장소: 사천시청 재난안전과 비치

14. 기타공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청 재난안전과(055-831-33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844호

※ 붙임 편입용지조서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편입면적 (㎡)	성 명
	시,군	읍,면,동	리					
1	사천시	서동		353	공	19,891.0	5,289.0	사천시
합 계						19,891	5,289	

사 천 시 공 보

제844호

사천시 고시 제2023-17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 7. 13.

사 천 시 장

신 고 자		점용·사용 승인사항				실시계획 신고 수리사항	
주 소	성 명	승인번호 (연월일)	승인기간	위 치	면적(㎡)	신고번호 (수리일자)	공 사 내 역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 (해양수산과장)	2023-17 (2023.6.26.)	2023.06.26.~ 2038.06.25.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3-10번지선	1,151 - 직접 78.5 - 간접 1072.5	2023-18 (2023.7.6.)	월등도항 부잔교 (B=3.7m, L=15m) 및 도교 설치 (B=1.2m, L=15m)

사 천 시 공 보

제844호

사천시 공고 제2023-1006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항에 의한 소유자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동법 제24조의2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 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 7. 13.

사 천 시 장

- 공 고 명 칭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 공 고 기 간 : 2023. 7. 13. ~ 2023. 7. 28.(15일간)
- 공 고 대 상

신청대상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일자	운행정지 사유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268소7364	G80	최*원	2023. 7. 7.	제3자가 차를 빌려간 후 연락이 되지 않음

4. 공 고 내 용

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공고하오니, 차량운행자께서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고 운행정지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7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동법 제82조(벌칙) 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 사용자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함.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천시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055-831-33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844호

사천시 공고 제2023-1007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항에 의한 소유자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동법 제24조의2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 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 7. 13.

사 천 시 장

- 공 고 명 칭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 공 고 기 간 : 2023. 7. 13. ~ 2023. 7. 28.(15일간)
- 공 고 대 상

신청대상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일자	운행정지 사유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14루2096	아반떼 (AVANTE)	곽*호	2023. 7. 7.	배우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제3자와 함께 운행

4. 공 고 내 용

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공고하오니, 차량운행자께서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고 운행정지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7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동법 제82조(벌칙) 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 사용자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함.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천시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055-831-33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844호

사천시 공고 제2023-1008호

[] 통행의 금지·제한
[] 차량의 운행 제한] 변경 공고

「도로법」 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 통행의 금지·제한
[] 차량의 운행 제한]을

변경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0일

사 천 시 장

도로의 종류	도시계획도로	노선명	남부 중로1-12호선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공사차량을 제외한 차량	구간	사천시 벌리동 494-9 ~ 사천시 벌리동 494-10
기간	당초: 2023년 7월 10일(월)~11일(화), 7월 17일(월) 변경: 2023년 7월 10일(월)~14일(금), 7월 17일(월)		

변경이유: 우천으로 인한 건축물(벌리동 495-8번지) 해체공사 기간 변경

그 밖의 사항

사천시 벌리동 495-8번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우회하여 통행.

첨부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사 천 시 공 보

제844호

사천시 공고 제2023-1009호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소로2-66호선)]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건설부 고시 제119호(1971.2.27.)로 최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사천시 고시 제2020-241호(2020.7.2.)로 최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소로2-66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입안을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13일

사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66	8	국지 도로	274	소로1-30	소로1-29	일반 도로	소로1-26	'71.02.27.	
변경	소로	2	66	8	국지 도로	389	소로2-67	소로1-29	일반 도로	소로1-26	'71.02.27.	

사 천 시 공 보

제844호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2-66호선	소로2-66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연장 확장 (L=274m→389m, 증:115m)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후건축물 밀집지역의 긴급차량 접근성 향상 등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및 주거지역 기능 강화를 도모

2.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 : 사천시청 도시과

4. 관계도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열람장소 비치)

5. 관계도면 : 게재생략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도시과(☎055-831-31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공보

제844호

위치도

■ 위치 :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35-10번지 일원



■ 위성사진



사 천 시 공 보

제844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주민의견 제출서

입안명	사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소로2-66호선)] 결정(변경)	
사업장 위치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34-10번지 일원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입안에 관한 의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7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844호

사천시 공고 제2023-1011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산후조리비를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확대하고, 인구증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임신부·다자녀 가족 할인업소 지원과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금액에 대해 물가 상승에 따른 변동을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원기준과 우대인증 이용시설에 대한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

사 천 시 공 보

제844호

2. 주요내용

가. 산후조리비 처리기한 연장(안 제5조제4항제2호)

나.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안 별표 1)

다. 지원기준 탄력적 반영(안 별표 1, 별표 2)

라. 시책 항목 변경(안 별표 1, 별표 2)

마. 중의적 표현(사천시 실내수영장)문구 수정(안 별표 1, 별표 2)

1) 사천시 실내수영장 → 사천시실내수영장 및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3. 참고사항

관련법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누리집(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 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196, FAX : 831- 6011)

사 천 시 공 보

제844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844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7. .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관

1. 의결주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산후조리비를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확대하고, 인구증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임산부·다자녀 가족 할인업소 지원과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금액에 대해 물가 상승에 따른 변동을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원기준과 우대인증 이용시설에 대한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

사 천 시 공 보

제844호

3. 주요내용

- 가. 산후조리비 처리기한 연장(안 제5조제4항제2호)
- 나.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안 별표 1)
- 다. 지원기준 탄력적 반영(안 별표 1, 별표 2)
- 라. 시책 항목 변경(안 별표 1, 별표 2)
- 마. 중의적 표현(사천시 실내수영장)문구 수정(안 별표 1, 별표 2)
 - 1) 사천시 실내수영장 → 사천시실내수영장 및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 나. 예산조치: 2023년 제2회 추경 확보예정(2억 5천만원)
-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건강증진과
- 라. 기 타
 - 1) 신·구 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 2) 입법예고
 - 가) 기 간: 2023. 7. . ~ 2023. 7. .(20일간)
 - 나) 제출의견: 없음, 있음(건)
 -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4) 비용추계서: 붙임
 -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44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가.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1) 산후조리비 증액을 위한 예산액 반영

나. 비용추계 결과

1) 추계의 전제

- 이 조례안의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산후조리비는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2023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시행함.

- 시민 모두가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발생 비용

※2022년도 출생아 수: 469명

2)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세출	일반회계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소 계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세입	지방세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소 계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다. 부대의견: 없음

기 획 예 산 담 당 관 임 정 의 (인)

사 천 시 공 보

제844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재원조달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의존 재원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소 계						
자체 수입	지방세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세외수입						
	소 계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일반회계에 편성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기 획 예 산 담 당 관 임 정 의 (인)

사 천 시 공 보

제844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20일”을 “30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후조리비에 관한 적용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출산장려시책 지원(제4조제1호 관련)

지원내용	상세내역
임신축하용품	○ 시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임신부 등록한 자를 대상 임신축하용품 지급
출산지원금	○ 첫째 아: 100만원 - 신청서에 따라 1회에 전액 지급 ○ 둘째 아: 200만원 - 신청서에 따라 1회에 전액 지급 ○ 셋째 아 이상: 800만원 - 출산 후 신청서 제출 시: 20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1년(12개월) 되었을 때: 15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2년(24개월) 되었을 때: 15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3년(36개월) 되었을 때: 15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4년(48개월) 되었을 때: 150만원 ○ 첫만남이용권(출생아동에게 200만원 상당 바우처 지원)
출산축하용품	○ 시 관내 출생신고자 대상 출산축하용품 지급 ○ 아기 탄생 축하메시지 게시자를 대상으로 출산축하용품(상품권을 포함한다) 지급
산후조리비	○ 제3조제8호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출산 시마다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모유수유 클리닉	○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 대여기간 2개월
출생아 복지보험료	○ 시와 협약한 업체에 가입되며, 5년간 보험료(3만원 이내)를 지원
임산부, 신생아 및 영유아 지원 등	○ 시의 출산장려 시책 및 계획에 따라 지원
임산부·다자녀 가족 할인업소 지원	○ 시와 협약한 업소를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우대인증	○ 둘째 아 이상 출산 가정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유효기간 5년, 분실·훼손 시 재발급 가능) - 사천 실내수영장 및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용료 : 일반인 이용자의 수영장 개인 이용료 또는 월 이용료 기준 50퍼센트 할인 -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사천시 주최·주관 기획공연에 한하여 정액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30퍼센트 할인 -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50퍼센트 할인 - 항공우주박물관 관람료: 무료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람료: 무료
쓰레기봉투 지원	○ 둘째 이상의 출생아 한 명당 400리터 지원 단, 다태아인 경우 첫째 출생아에게도 400리터 지원
수도요금 감면	○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제3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수도 요금감면

지원내용	상세내역
결혼축하금 지원	<p>○ 제3조제9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생애 1회에 한하여 부부당 100만원 지원</p> <p>가. 신청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p> <p>나. 지원대상: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19세 ~ 49세이하로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단, 6개월 미만시 연속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p> <p>다. 지원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 중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기 지원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원받는 자만 50만원 지급 -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은 한국인 사이의 혼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외국인 배우자의 전입일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날을 전입일로 한다 <p>라. 지원방법: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고 사천사랑상품권을 부부 각자에게 50만원씩 지급하되 동의나 위임이 있는 경우 일방 또는 타인에게 지급 가능</p>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성공 축하금	<p><input type="checkbox"/> 참여자 기념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 참여자 - 지원내용: 10만원 상당의 기념품 <p><input type="checkbox"/> 성공축하금</p> <p>○ 시 주관 동일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 참여자로서 제3조제10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생애 1회에 한하여 한 쌍당 100만원 이내의 사천사랑상품권 지원</p> <p>가. 신청기간: 미혼남녀 인연 행사로부터 2년 이내</p> <p>나. 지원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19세~49세이하로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혼인신고일 현재 사천시 거주자일 것</p> <p>다. 지원특례: 부부중 혼인신고일 현재 사천시 거주자가 아닌 자나 이미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하고 생애 최초인 거주자만 50만원 지원</p>

[별표 2] <개정 2023.4.27.>

전입시책 지원(제4조제2호 관련)

지원내용	지 원 기 준
우대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이용료 감면(유효기간 5년, 분실·훼손시 재발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천 실내수영장 및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용료 : 일반인 이용자의 수영장 개인 이용료 또는 월 이용료 50퍼센트 할인 -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 사천시 주최·주관 기획공연에 한하여 정액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30퍼센트 할인 -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 50퍼센트 할인 - 항공우주박물관 관람료 : 무료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람료 : 무료
쓰레기봉투 지원	○ 전입하는 사람 한 명당 1회에 한하여 400리터 지원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 기숙사비 중 학기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재학생 한정)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출산자와의 관계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출생자	성명 ※ 출생자 모두 기재
-----	-------------------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에 []아니오
	배우자			[]에 []아니오	
	자			[]에 []아니오	
	자			[]에 []아니오	
	자			[]에 []아니오	

사천시 자체 서비스	[] 출산 지원금	[] 첫째 자녀(이름:) [] 둘째 자녀(이름:) [] 셋째 이상 자녀(이름:)
	[]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시 1회당 100만원 지원 ※ 출생일 전후로 180일 이상 주소지를 둔 부 또는 모
	[] 출산축하용품	[] 아기용품세트 [] 쓰레기봉투(단, 둘째 자녀 이상) / 둘째 자녀 이상(이름:)
	[] 우대인증	가구원 성명()
	[] 셋째 이상 출생아 복지 보험	[] 셋째 이상 자녀(이름:) ※ 보험료 지원기간(5년) 내 타 지역으로 전출시 지원 자격 상실됨
	[] 유족기 대여	※ 당일 예약제로 운영되며,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보건소 모자보건실(831-3527)로 문의
[] 수도요금 감면	[] 셋째 자녀 이상 (이름:) 수용가명 : 수용가번호 : 감면세대주 성명 :	

전국 공통 서비스	서비스명	신청 구분
		첫만남이용권(2022.1.1. 이후 출생자)
	영아수당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	[] 영아수당(현금)
	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	[]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아동수당	[] 아동수당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국기초 []차상위 []한부모 []기타) [] 조제분유([]산모의 사망·질병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기타)
	해산급여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전기료 경감	[] 출산가구 [] 다자녀(3명 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 (3명 이상)	도시가스료 경감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지역난방비 경감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 (2명 이상)	KTX 다자녀 행복 할인 [] 회원명 : 생년월일 : 멤버십 번호 : SRT 다자녀 가족 할인 [] 회원명 : 생년월일 : 휴대전화번호 : 멤버십 번호 :
	※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 BC카드(은행)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롯데카드 [] 신한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시 작성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에 √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에 √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를 선택(BC7업, N농협, S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우리, 전북, 제주, 우체국, 하나, 신한)

급여 계좌	성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 영아수당(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영아수당(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20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사천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4.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출산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서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경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출산 가구 전기로 경감과 다자녀 전기로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로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이견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견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해산급여 대상여부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대상자적 조회 시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적 조회 시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 제2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 지원제공 계약 및 본인확인 업무, 이용권 적정급여 관리업무,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상담전화(TM)), 이용권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 제공
 - 이용권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청구 등 업무, 이용권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또는 결제내역 송수신(SMS), 기저귀 및 조제분유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6.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센터,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7. 전기로,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8.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에스알에서 제공하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회원탈퇴시까지,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가족관계, 회원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서비스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서 정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 좌석이 초기에 매진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의 영업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되거나 운영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당일에는 할인권 예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승차권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승차권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금액 회수 및 별도 부가임금이 부과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금액 회수, 부가임금 수수 및 할인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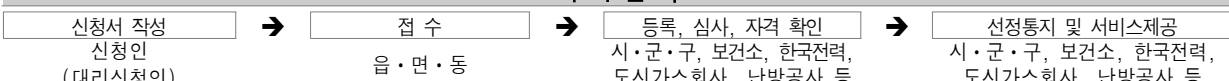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9. 다자녀 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처리를 위해 다자녀 여부 등의 가족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별 서비스 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영아수당(현금) : 양육수당 : 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호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1. 영아수당(현금)급여를 신청한 경우, 연령 도래시(만2세) 가정양육수당급여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2.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별지 제12호서식]

우대인증(제3조제6호 관련)

<h3>우 대 인 증</h3>		
성 명:		
(가족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유효기간: 년 월 일)	
 사 천 시		

(가로 8.5cm × 세로 5.5cm)

(뒷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면 내용··· <p>※ 우대인증 가족 성명에 기재된 사람만 사용 가능</p> <p>※ 신분증과 함께 제시</p> <p>※ 중복할인 불가</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 ③ (생 략)</p> <p>④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 (생 략)</p> <p>2. 출산지원금 및 산후조리비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u>20일</u>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5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30일</u> ----- ----- -----</p> <p>-.</p>

관 련 법 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 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44호

사천시 공고 제2023-1013호

「사천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천시의 4차 산업혁명 촉진과 미래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혁신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천 시 공 보

제844호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우주항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 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우주항공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485, FAX: 831-6044)

사 천 시 공 보

제844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844호

사천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 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7. .

제 출 자: 우주항공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사천시의 4차 산업혁명 촉진과 미래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혁신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천 시 공 보

제844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7. 13. ~ 2023. 8. 2.(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44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4차 산업혁명 촉진과 미래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혁신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2. “미래산업”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성장 잠재력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미래형 항공기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ICT융복합, 빅데이터, 자율주행, 수면비행선박, 중앙정부의 산업 정책 기조에 따라 육성하기로 한 분야 등 새로운 지역전략 산업 부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44호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천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육성에 대한 기본 전략 수립
2.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과 관련한 국내·외 현황, 환경변화, 성장 전망
3.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방향 및 육성 시책
4.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육성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 개선
5.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
6.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의 기술활용, 창업, 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7.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관련 행사, 기술개발, 연구사업 등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에 관한 교육·홍보 등 시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9.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원 등의 확보 방안
10.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844호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천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등의 지원)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역대학 및 관련 기관·단체, 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
2.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3. 생산 제품의 사업화, 시장화, 판로개척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 하기 위하여 사천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의 정책 발굴 및 관련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844호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관련 대학교수, 기관·단체·기업의 임직원
2.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관련 과학·기술·경제·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44호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사 천 시 공 보

제844호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 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협의 또는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협의 또는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협의 또는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의 기반을 확보하고,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필요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둔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 자. 생 략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사 천 시 공 보

제844호

사천시 공고 제2023-1015호

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㉔)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사천시 고시 제2017-188호(2017.10.25.)로 최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㉔)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입안을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13일

사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1)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6	주차장	사천시 서금동 146번지	3,000	증)3,070	6,070	사천시고시 제2017-188호 (2017.10.25.)	

사 천 시 공 보

제844호

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26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 확장 A=3,000㎡→6,070㎡ (증 3,0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객과 지역민들을 위한 주차 및 행사 공간을 확보하여 팔포음식특화거리, 전어 등 안정적인 공익적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 도모

2.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 : 사천시청 도시과

4. 관계도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열람장소 비치)

5. 관계도면 : 게재생략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도시과(☎055-831-31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844호

위 치 도

■ 위치 : 사천시 서금동 146-3번지 일원



■ 위성사진



사 천 시 공 보

제844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주민의견 제출서

입안명	사천 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26) 결정(변경)	
사업장 위치	경상남도 사천시 서금동 146-3번지 일원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입안에 관한 의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7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844호

사천시 공고 제2023-1017호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칙 조문 중 여유자금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예탁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제3조에 오기된 내용이 있어 수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타 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계정 예탁에 관한 조항 내용 수정(부칙 제3조)

사 천 시 공 보

제84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 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 기획예산담당관)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221,
FAX: 831-6011)

사 천 시 공 보

제844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844호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7. .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관

1. 의결주문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부칙 조문 중 타 회계 여유자금 예탁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제3조에 오기된 내용이 있어 수정 필요

3. 주요내용

가. 타 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계정 예탁에 관한 조항 내용 수정(부칙 제3조)

사 천 시 공 보

제844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7. 13. ~ 2023. 8. 2.(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44호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717호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제2항 및 제2항 중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를 각각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제3호, 같은 조 제7항, 제7항, 같은 조 제8항제5호, 같은 조 제9항제6호, 같은 조 제10항의 제2항, 같은 조 제11항 제3호, 같은 조 제1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3항제3호, 같은 조 제14항의 제4항, 같은 조 제15항의 제3항, 같은 조 제16항의 제7항, 같은 조 제17항의 제2항, 같은 조 제18항의 제4항, 같은 조 제19항의 제4항 중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를 각각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조례 제1717호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p> <p>②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②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④ (생략)</p> <p>⑤ (생략)</p> <p>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p> <p>⑥ (생략)</p> <p>3.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p>	<p>조례 제1717호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②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 -----.</p> <p>④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 ----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 -----.</p> <p>⑥ (현행과 같음)</p> <p>3.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p>

정화기금으로 예탁

⑦ (생략)

⑦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⑧ (생략)

5.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⑨ (생략)

6.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⑩ (생략)

②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⑪ (생략)

3.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

⑦ (현행과 같음)

⑦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⑧ (현행과 같음)

5.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⑨ (현행과 같음)

6.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⑩ (현행과 같음)

②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⑪ (현행과 같음)

3.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기금으로 예탁

⑫ (생략)

4.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⑬ (생략)

3.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⑭ (생략)

④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⑮ (생략)

③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⑯ (생략)

⑦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⑰ (생략)

⑫ (현행과 같음)

4.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⑬ (현행과 같음)

3.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⑭ (현행과 같음)

④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⑮ (현행과 같음)

③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⑯ (현행과 같음)

⑦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⑰ (현행과 같음)

④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⑱ (생략)

④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④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

⑱ (현행과 같음)

④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6. 9.]

사 천 시 공 보

제844호

사천시 공고 제2023-1018호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별지 제3호 예탁금 증서 서식 중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행정절차의 효율화 및 간소화 추진

2. 주요내용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증서의 내용 수정 및 불필요한 문구 삭제(별지 제3호 서식)

사 천 시 공 보

제84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 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 기획예산담당관)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221, FAX: 831-6011)

사 천 시 공 보

제844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844호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7. .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관

1. 의결주문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별지 제3호 예탁금 증서 서식 중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행정절차의 효율화 및 간소화 추진

3. 주요내용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증서의 내용 수정 및 불필요한 문구 삭제(별지 제3호 서식)

사 천 시 공 보

제844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7. 13. ~ 2023. 8. 2.(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44호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탁금증서

금 액: 금 원 (금 원)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예 탁 자: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탁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수 탁 자: 사천시 통합기금운용관 (인)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6. 9.]

사 천 시 공 보

제844호

사천시 공고 제2023-1019호

「사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회의 미개최 또는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천시 갈등관리소통심의위원회 비상설화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5항)
- 나.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위원 임기, 해촉 규정 삭제(안 제11조 및 제13조)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사 천 시 공 보

제84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 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210, FAX: 831- 6011)

사 천 시 공 보

제844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844호

사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7. .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관

1. 의결주문

사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회의 미개최 또는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천시 갈등관리소통심의위원회 비상설화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5항)

나.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위원 임기, 해촉 규정 삭제(안 제11조 및 제13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사 천 시 공 보

제844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7. 13. ~ 2023. 8. 2.(20일)

- 제출의견: 건

- 반영여부: 해당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사 천 시 공 보

제844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생략)</p> <p>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u>호선한다.</u></p> <p>③·④ (생략)</p> <p><u><신 설></u></p> <p>제11조(위원의 임기) ①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p> <p>② <u>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u></p> <p>제12조(회의 등) ① <u>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 소집한다.</u></p> <p>② (생략)</p> <p>③ <u>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면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심의안건 및 심</u></p>	<p>제10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호선(互選)한다.</u></p> <p>③·④ (현행과 같음)</p> <p>⑤ <u>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u></p> <p><u><삭 제></u></p> <p>제12조(회의 등) <u><삭 제></u></p> <p>②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현행	개정안
<p><u>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p> <p>④·⑤ (생략)</p> <p><u>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u>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 <u>위원이 위원직의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u></p> <p>2. <u>질병, 사망,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u></p> <p>3. <u>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u></p> <p>4. <u>제1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u></p>	<p>④·⑤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제14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② (생략)</p> <p><u>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u></p> <p>④ (생략)</p>	<p>제14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6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p>	<p>제16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 -----</p>

현행	개정안
<p>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u>호선한다</u>.</p> <p>② ~ ⑥ (생략)</p>	<p>-----</p> <p>-----</p> <p>----- <u>호선(互選)한다</u>.</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관 련 법 령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적용대상) ①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이 영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